



## 2.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및 서비스 종류

### 노인장기요양인정 절차?

#### ① 인정신청

**(대상)**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

**(방법)**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, 인터넷([WWW.longtermcare.or.kr]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)



#### ② 인정조사

**공단 직원**  
(간호사, 사회복지사등)  
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 
요양필요도 확인

#### ③ 의사소견서 제출 (법정 서식)

**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**  
안내를 받은 제출일까지  
공단에 제출  
(인정조사 후 제출여부 결정)

#### ④ 등급판정

**등급판정위원회에서**  
**장기요양등급 결정**  
(1등급~5등급, 인지기원등급)

#### ⑤ 장기요양인정서 배부

**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**  
**장기요양인정서등 배부**  
(내방, 우편발송등)

#### ⑥ 서비스 이용

**장기요양기관을 선정**  
-> 급여계약 체결  
->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

### 장기요양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 종류 ?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(치매)	인지지원등급(치매)
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, 복지용구	재가급여, 복지용구			주.야간보호 복지용구	

■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■ 시설급여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■ 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